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1.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72호 및 제373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의 구비 분담금, 법정 필수 경비,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의 편성을 위한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202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043,686,966	905,401,113	138,285,853	15.27
일반회계	1,013,037,386	881,873,755	131,163,631	14.87
특별회계	30,649,580	23,527,358	7,122,222	30.27
의료급여	686,984	540,000	146,984	27.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6,835	45,300	1,535	3.39
주 차 장	27,500,448	21,637,145	5,863,303	27.10
건축안전	2,415,313	1,304,913	1,110,400	85.09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131,163,631천원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1,013,037,386	881,873,755	131,163,631	
지방세 수입	197,688,180	197,688,180	0	
보통세	196,955,924	196,955,924	0	
지난년도 수입	732,256	732,256	0	
세외수입	109,327,190	108,327,190	1,000,000	
경 상 적 세외수입	71,669,910	71,669,910	0	
임 시 적 세외수입	8,260,218	7,260,218	1,000,000	○ 지역자활센터 이전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9,397,062	29,397,062	0	
지방교부세	13,928,000	13,928,000	0	
조정교부금 등	88,984,519	88,984,519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	88,984,519	88,984,519	0	
보 조 금	405,719,609	397,945,866	7,773,743	
국고 보조금	237,496,979	235,287,505	2,209,474	
시·도비 보조금	168,222,630	162,658,361	5,564,26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7,389,888	75,000,000	122,389,888	
보전수입 등	197,389,888	75,000,000	122,389,888	○ 순세계잉여금: 111,579,715 ○ '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10,810,173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131,163,631천원

● 정책사업비 ----- 47,893,449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376,960 천원
② 자치회관 환경개선 ^신 (문래동 공유주방, 신길6동 방음시설)	96,467 천원
③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인테리어	69,600 천원
④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52,350 천원
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	112,356 천원 (국 73,500) (구 38,856)
⑥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259,620 천원
⑦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8,600,000 천원
⑧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4,500,000 천원
⑨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신	297,000 천원
⑩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신	58,000 천원
⑪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등	5,874,000 천원
⑫ 영등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신	11,540 천원
⑬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	323,124 천원
⑭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1,199,778 천원
⑮ 지역자활센터 이전	1,000,000 천원
⑯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4,000,000 천원
⑰ 부모급여 지원	1,684,439 천원 (국 757,998) (시 648,509) (구 277,932)
⑱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신규 조성 ^신	207,000 천원

⑱ 도림게이트볼장 정비 및 안양천 데크 조명 설치 ^신	213,000 천원
⑳ 태풍대비 공원 등 수목 가지치기 (공원, 학교, 태풍대비)	172,000 천원
㉑ 정원·공원 및 황톳길 문화행사 ^신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원 문화행사, 황톳길 걷기행사)	77,200 천원
㉒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	200,000 천원
㉓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신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579,000 천원
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신	850,000 천원
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신	800,000 천원
㉖ 보행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신 (당산중 후문 앞 등 5개 사업)	212,965 천원
㉗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50,000,000 천원
㉘ 의정활동지원	81,600 천원

● '23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8,630,777 천원

● 예비비 ----- 3,996,448 천원

▶ 일반예비비: 1,779,000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17,448천원

● 행정운영경비----- 273,957 천원

▶ 인건비: 54,766천원

▶ 특근매식비: 219,191천원

● 기금전출금 ----- 60,369,000 천원

▶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000,000천원

▶ 통합기금 전출금: 10,369,000천원

나. 특별회계 ----- 7,122,222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46,984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146,348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636천원

● 세출

▶ 재가의료급여 사업: △14,020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14,020천원

▶ 보조금 반환금: 146,984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1,535천원

● 세입

▶ 국고보조금: 1,535천원

● 세출

▶ 국고보조금 반환금: 1,535천원

▣ 주차장 특별회계 ----- 5,863,303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5,805,738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7,565천원

● 세출

▶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비: 148,750천원

▶ 행정운영경비: 3,932천원

▶ 예탁금: 5,543,349천원

▶ 보조금 반환금: 167,272천원

□ 건축안전 특별회계 ----- 1,110,400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712,837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397,563천원

● 세출

▶ 건축물 보수보강 및 복구 등 사업비: 662,071천원

▶ 행정운영경비: 1,998천원

▶ 보조금 반환금: 446,331천원

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326,916,801	274,946,165	51,970,636	18.90
감사담당관		340,650	336,959	3,691	1.10
행정국	총 무 과	133,052,042	133,019,054	32,988	0.02
	홍보미디어과	5,604,495	5,528,613	75,882	1.37
	자치행정과	16,491,629	12,788,508	3,703,121	28.96
	미래교육과	34,672,792	34,170,321	502,471	1.47
	문화체육과	45,742,675	28,403,733	17,338,942	61.04
	민원여권과	1,344,199	1,319,652	24,547	1.86
기 획 재정국	기 획 예 산 과	34,288,276	14,044,594	20,243,682	144.14
	지 역 경 제 과	7,165,769	3,343,473	3,822,296	114.32
	일 자리 정책 과	7,944,700	7,209,263	735,437	10.20
	재 무 과	752,047	749,325	2,722	0.36
	징 수 과	897,275	892,587	4,688	0.53
	재 산 세 과	653,678	630,729	22,949	3.64
	지 방 소 득 세 과	390,401	386,469	3,932	1.02
보건소	보건위생과	11,859,184	11,848,881	10,303	0.09
	감염병관리과	10,794,198	9,582,707	1,211,491	12.64
	건강증진과	13,445,552	9,444,711	4,000,841	42.36
	의 약 과	1,477,239	1,246,586	230,653	18.50

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일반회계)

【감사담당관】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340,650	336,959	3,691	1.10% 증
감사담당관	340,650	336,959	3,6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3,629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

【행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236,907,832	215,229,881	21,677,951	10.17% 증
총 무 과	133,052,042	133,019,054	32,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26,000 ◦ 기본경비 6,351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37
홍 보 미디어과	5,604,495	5,528,613	75,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뉴딜일자리 영상홍보 전문가 양성 4,892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66,000 ◦ 기본경비 4,990
자 치 행 정 과	16,491,629	12,788,508	3,703,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376,960 ◦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69,600 ◦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7,414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62,470 ◦ 자치회관 환경개선 96,467 ◦ 자원봉사센터 운영 7,358 ◦ 기본경비(과동) 59,423 ◦ 국고보조금 반환금 2,055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74
미 래 교 육 과	34,672,792	34,170,321	502,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52,350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112,356 ◦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259,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3,024 ◦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45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176
문 화 체 육 과	45,742,675	28,403,733	17,338,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190,200 ◦ 중무행사 지원 및 향토유산 진흥 1,248 ◦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48,000 ◦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 △16,533 ◦ 영등포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10,755 ◦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7,433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0,560 ◦ 핫돌핫돌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107,520 ◦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10,000 ◦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000 ◦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297,000 ◦ 체육시설 위탁 운영 69,400 ◦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8,600,000 ◦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4,500,000 ◦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58,000 ◦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5,000 ◦ 기본경비 3,780 ◦ 국고보조금 반환금 731,554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20,025
민 원 여 권 과	1,344,199	1,319,652	24,5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5,292 ◦ 국고보조금 반환금 19,255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52,092,146	27,256,440	24,835,706	91.12% 증
기 획 예 산 과	34,288,276	14,044,594	20,243,6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사무 처리 5,874,000 ◦ 예비비 3,996,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4,234 ◦ 예탁금 10,369,000
지 역 경 제 과	7,165,769	3,343,473	3,822,2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754,994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2,134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8,626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11,540 ◦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40,000 ◦ 기본경비 3,478 ◦ 국고보조금 반환금 19,129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42,395
일 자 리 정 책 과	7,944,700	7,209,263	735,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 323,124 ◦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관리 및 집수리 전문인력) 4,355 ◦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9,368 ◦ 기본경비 2,873 ◦ 국고보조금 반환금 75,704 ◦ 시비보조금 반환금 320,013
재 무 과	752,047	749,325	2,722	◦ 기본경비 2,722
징 수 과	897,275	892,587	4,688	◦ 기본경비 4,688
재산세과	653,678	630,729	22,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5,292 ◦ 국고보조금 반환금 17,657
지 방 소득세과	390,401	386,469	3,932	◦ 기본경비 3,932

【보 건 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37,576,173	32,122,885	5,453,288	16.98% 증

보 건 위 생 과	11,859,184	11,848,881	1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4,385 ◦ 국고보조금 반환금 2,73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88
감 염 병 관 리 과	10,794,198	9,582,707	1,211,4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7,714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672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41,886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2,590 ◦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360 ◦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0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0 ◦ 암 환자 치료비 지원(전환사업) △4,000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00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230,000 ◦ 기본경비 4,083 ◦ 국고보조금 반환금 382,094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5,812
건 강 증 진 과	13,445,552	9,444,711	4,000,8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9,617 ◦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3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757,280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0,226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148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61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69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543,21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구비) 8,000 ◦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720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시비)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963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10,500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20,000 ◦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시비) 85,365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15,008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1,048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8,380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0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440 ◦ 마음투자 지원사업 460,000 ◦ 정신응급병상 운영 60,000 ◦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인건비(시비) 14,657 ◦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시비) 19,918 ◦ 기본경비 3,176 ◦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0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89,969
의 약 과	1,477,239	1,246,586	230,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86,400 ◦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16,000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544 ◦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26,400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368 ◦ 기본경비 5,292 ◦ 국고보조금 반환금 37,841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808

5. 검토의견

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749억 4,616만원에서 519억 7,064만원이 증액된 3,269억 1,680만원으로 증감률은 18.90%임.

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3,696만원 대비 369만원 증액(1.10%)된 3억 4,065만원으로,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6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임.

(2) 행정국

-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2억 2,988만원 대비 216억 7,795만원 증액(10.07%)된 2,369억 783만원으로, 이는 대림3동·신길3동 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임.

-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299만원 증액(0.02%)된 1,330억 5,204만원으로 계상됨.

이는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실제 운영에 따른 부족분 2,6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홍보미디어과**는 기정예산 대비 7,588만원이 증액(1.37%)된

56억 450만원이 계상됨.

이는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영상 홍보 전문가 양성 사업이 승인되어 구비 매칭으로 489만원, 민원인이 전화 시 통화연결음에 녹취 사전고지가 될 수 있는 안내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6,6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312만원이 증액(28.96%)된 164억 9,163만원이 계상됨.

이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중단없는 공사 지속 추진을 위해 계속 공사비로 33억 8,636만원 편성되었으나, 선거 관계로 시행하지 못한 착공식 소요 예산 1,24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7,696만원이 편성됨.

*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4,463	863	8,203	4,997	400
구비	11,663	863*	6,703	3,697	400
기타	2,800 (특교 2,300) (특교세 500)	-	1,500 (특교 1,000) (특교세 500)	1,300 (특교 1,300)	-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신청사 다목적실 흡음제 설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960만원을,

*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계	7,593	7,130	463	-	-
사업비	7,593	7,130 (민간재원)	463	-	-

자율방법대 운영 지원사업으로 시비교부금 교부 통보에 의거, 방한복 구매를 위한 구비 매칭 부족분으로 2,741만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인지도 상승으로 모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답례품 구매 및 배송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6,247만원을, 문래동(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조성)과 신길6동(신길6동 자치회관 방음시설 설치) 자치회관 환경개선을 위해 9,647만원을,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 및 설치에 736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47만원이 증액(1.47%)된 346억 7,279만원이 계상됨.

이는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표준 품셈 기준 반영 및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역비)로 5,235만원을,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사업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에 대응(국비 70%, 구비 30%)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억 1,236만원을,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으로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형 스터디카페형 독서실로 개선하고자 2억

5,962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73억 3,894만원이 증액(61.04%)된 457억 4,268만원이 계상됨.
이는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제253회 제1차 정례회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안건 상정)으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의 노후된 조명콘솔과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1억 9,020만원을, 지역 내 향토유산(관내 비지정 향토유산(방학곶지 부군당, 당산동 부군당, 신기리 도당, 상산전) 4개소)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향토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125만원을,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문화예술 소외계층 대상의 공연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기존 10회 → 18회(18개동)) 사업으로 4,800만원을, 202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 선정되어 **영등포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인건비 등 매칭을 위해 1,076만원을,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학교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 및 방학기간 특강 프로그램 신규 운영을 위한 강사료 추가 지원비 및 사무국장 등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3,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햇돌햇돌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사업으로 '23년 대비 참여 어린이집 확대(25개소→34개소)에 따른 강사비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1억 752만원을,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전국·시·도 단위 대회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을,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관련 2024년 본예산 (200,500천원) 기(既)반영)을 위해 2억 9,700만원을, **체육시설 위탁 운영** 사업으로 제1스포츠센터 및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6,940

만원, 계속사업으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2차수)을 위해 86억원을,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45억원을,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및 시설 관리비로 5,800만원(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시설관리비 3,600만원)을 문래공원 국민체육시설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인건비가 1,653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2,455만원이 증액(1.86%)된 13억 4,420만원이 계상됨.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29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92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2) 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2억 5,644만원 대비 248억 3,571만원이 증액(91.12%)된 520억 9,215만원으로, 소송 패소비 배상금 부족분,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기금 예탁금(통합계정) 등이 증액 편성되고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 감액 편성됨.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02억 4,368만원이 증액(144.14%)된 342억 8,827만원이 계상된바, 소송사무 처리에서 우리 구 패소판결로 발생하는 배상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고자 진행 중인 소송* 패소 시 배상금 부족분으로 58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으며,

*** 패소예정 소송내역(총 4건)**

연번	원고(부서명)	사건명	지급액(천원)	진행내역
1	부동산투자 주식회사 (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사 항변경신고 수리거분처분 취소	50,000	· 1심, 2심 원고 승 · 상고포기
2	위재수(도로과)	부당이득금반환	45,000	· 1심 원고 일부 승 · 2심 진행중(23.6.~)
3	윤묘분(도로과)	부당이득금반환	55,000	· 1심 원고 일부 승 · 2심 진행중(23.10.~)
4	조선선재 (건축과)	손해배상	5,724,000	· 1심 원고 일부 승 · 2심 진행중(23.2.~) · 판결선고기일 (6.19.예정)
계			5,874,000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는 일반예비비는 17억 7,900만원이, 예비비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2억 1,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예탁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원으로 103억 6,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됨.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2,230만원이 증액(114.32%) 된 71억 6,577만원이 계상됨.

이는 영세하고 노후화된 도시제조업 5대 직종 소공인 사업장의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7억 5,499만원 신규 편성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행사비 증가분 사업 등으로 1,213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장 공동 마케팅 행사 및 매니저 지원을 위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1,867만원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관리 위탁을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영등포동2가 466외 1필지) 운영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5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적(m ²)	비고
지하 1층	부설주차장(14면), 공영주차장(6면), 창고 등	1,369.4	주차면: 76면 (공영주차장 62, 부설주차장 14) *부설주차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위탁 추진
지하 2층	공영주차장(33면), 팬룸 등	1,369.5	
지하 3층	공영주차장(23면), 기계실, 저수조 등	1,349.4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하므로 4,000만원 감액 편성됨.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3,544만원이 증액(10.20%)된 79억 4,470만원이 계상됨.

이는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 사업(노후시설 정비 및 내부 리모델링)으로 노후 시설 환경 개선, 구직자 편의시설 확충 및 일자리지원 센터를 확대 조성(기존 49m² ⇨ 188m²)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2,3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학교 기술교육 보조강사 및 취약계층 집수리 시공 참여 등을 통한 집수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주거관리 및 집수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43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인상률을 반영하여 937만원 등이 증액편성됨에 기인함.

-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72만원이 증액(0.36%)된 7억 5,205만원이 계상됨.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7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469만원이 증액(0.53%)된 8억 9,728만원이 계상됨.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6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재산세과**는 기정예산 대비 2,295만원이 증액(3.64%)된 6억 5,368만원이 계상됨.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29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7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지방소득세과**는 기정예산 대비 393만원이 증액(1.02%)된 3억 9,040만원이 계상됨.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93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3) 보건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1억 2,289만원 대비 54억 5,329만원이 증액(16.98%)된 375억 7,617만원으로, 이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 **보건위생과** 기정예산 대비 1,030만원이 증액(0.09%)된 118억 5,918만원이 계상됨.
이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39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73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1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감염병관리과** 기정예산 대비 12억 1,149만원이 증액(12.64%)된 107억 9,420만원이 계상됨.
이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71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홍보물과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4,189만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220만원을 암 환자 치료비 지원(전환사업)으로 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됨에 기인함.
- **건강증진과** 기정예산 대비 40억 84만원이 증액(42.36%)된 134억 4,555만원이 계상됨.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없음)됨에 따라 6,962만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으로 지원 횟수가 확대(기존 22회 → 25

회) 및 서울시 거주요건 및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로 17억 5,728만원(시비 65%, 구비 35%)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료비 지원 사업으로 소득기준 폐지(중위소득 180%이하 → 기 준없음)로 1,915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의 대상자 소득기 준 확대(중위소득 150%이하 → 기준없음)로 5억 4,321만원 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기저귀(80천원→90천 원)·조제분유(100천원→110천원) 단가 상향 조정에 따라 1 억 2,000만원을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시비)으로 기간 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8,537만원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 는 어르신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1,501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음투자 지원사업 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로 4억 6,000만원을 정신응급병상 운영 사업으로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병상 확보를 위해 6,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3,023만원을 서울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472만원 등 이 감액 편성됨에 기인함.

- **의약과** 기정예산 대비 2억 3,065만원이 증액(18.50%)된 14억 7,724만원이 계상됨.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은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명지 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640만원

을, 초과용 진료의자 구입을 위해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사업에 1,600만원을,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리 교육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강사료로 2,640만원 등이 증액됨에 기인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대상: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기금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24년 말 구성 규모	현재 구성액	추경액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3,518	47,297	16,221	- 일반회계 10,369,000 - 특별회계 5,543,349 - 이자수입 등 309

- 변경요구액: 162억 2,113만원

- 변경사유: 2023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 기금예탁금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472억 9,733만원으로 편

성되었으나 162억 2,113만원 증액 변경함에 따라 635억 1,846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162억 2,113만원으로 예수금 159억 1,235만원, 이자수입 3억 589만원, 예치금 회수 289만원 증액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162억 2,113만원으로 예치금 162억 2,113만원 증액 편성함.

라. 검토결과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대림3동·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마음투자 지원 등 복지강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확정 내시 통보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3,195,153천원)이 큰 만큼, 국·시비 교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추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한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의 순증 편성(297,000천원) 관련,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의 적절성 등을 논의한 끝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200,500천원 기(既) 반영)로 변경하였던바, 당시 변경의 취지를 고려한 예산의 편성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타당하더라도

시의적으로 적절한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향후 어려운 세입 여건 등 긴급 사항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10,369백만원)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